

제4장 시상위원회 운영 규칙

제1절 시상 일반

제1조(목적)

대한의용생체공학회에서 학술, 연구, 산학협력활동, 학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치하하거나 진흥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상의 명칭)

시상의 명칭은 대한의용생체공학상, (주)루트로닉 의공학상, (주)대성마리프 의공학상,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우수논문상,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학술진흥상으로 한다.

제3조(수상인원)

수상자는 매년 1인 이상 선정하며 시상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의 자격)

수상자는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정회원으로서 의용생체공학의 발전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하며 세부 자격은 시상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다. 학술진흥상은 별도 세부 규칙에 따른다.

제5조(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인의 자격은 시상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한다.

제6조(시상위원회 구성)

1. 시상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총무이사가 담당한다.
2. 시상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5인과 (주)루트로닉과 (주)대성마리프 및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3. 시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사)

1. 시상위원회는 필요시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수상후보자 업적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2. 시상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수상자의 결정)

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제9조(상의 수여)

1. 상은 상패 또는 상패 및 상금으로 한다.
2. 상패와 상금은 본 학회 회장이 수여하되 후원기관이 상금을 제공하는 경우 상금은 후원기관 대표가 수여한다.

제10조(시상일 및 장소)

시상일 및 장소는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총회일과 총회장소로 한다.

제11조(수상자의 의무)

수상자는 의공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심사료의 지급)

필요시 시상위원회위원 및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일정)

수상자 선정의 각 단계는 다음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1. 후보자 추천공지: 8월 마지막 주
2. 후보자 추천마감: 9월 셋째 주
3. 1차 시상위원회: 9월 마지막 주
4. 심사위원 심사의뢰: 10월 첫째 주
5. 2차 시상위원회: 10월 셋째 주
6. 이사회(최종결정): 10월 마지막 주

제14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1년 시상에 대해서는 본 규칙을 소급 적용한다.

*별표: 시상 요건 요약

시상명	대한 의용생체 공학상	(주)루트로닉 의공학상		(주)대성마리프 의공학상		대한의용생체 공학회 우수논문상	대한의용생체 공학회 학술진흥상
		최우수연구 논문상	젊은의공학 자상	공로상	최우수 산학협력기 여상		
시상 인원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국문) 1명(영문)	제한없음
지원방식	추천	자천	자천	자천	자천	추천	추천
지원 자격 (지원일 기준)	정회원	정회원 (직전 3년이상)	박사학위 취득 10년 이내, 만 40세 미만 정회원	정회원 (직전 3년이상)	정회원 (직전 3년이상)	제한없음	제한없음
추천인 자격 (지원일 기준)	평의원	정회원 (직전 3년이상) 2인	정회원 (직전 3년이상) 2인	정회원 (직전 3년이상) 2인	정회원 (직전 3년이상) 2인	(영문) 영문지 편집장/ 편집이사 (국문) 국문지 편집장/편집 이사	영문지 편집장 및 편집이사
시상	상패, 상금	상패, 상금	상패, 상금	상패, 상금	상패, 상금	상패	상패, 상금

제2절 대한의용생체공학상

제1조(목적)

대한의용생체공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후원하는 대한의용생체공학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대한의용생체공학상이라 한다.

제3조(수상인원)

수상자는 매년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수상자의 자격)

수상자는 후보 추천일 기준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정회원으로서 의용생체공학의 발전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와 의료용구산업발전에 그 공적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5조(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평의원이 소정양식으로 추천하며 1인당 추천인원은 1명으로 한다.

제6조(규칙의 준용) 시상위원회 구성, 심사, 수상자의 결정, 상의 수여, 시상일 및 장소, 수상자의 의무, 심사료의 지급, 일정, 기타는 제1절 제6조에서 제1절 제14조에 따른다.

제7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1년 시상에 대해서는 본 규칙을 소급 적용한다.

제3절 (주)루트로닉 의공학상

제1조(목적)

대한의용생체공학회가 주관하고, (주)루트로닉이 후원하는 (주)루트로닉 의공학상의 시상
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주)루트로닉 의공학상이라 칭한다.

제3조(수상인원)

매년 “최우수연구논문상” 1명과 “젊은의공학자상”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수상자의 자격)

제1항 최우수연구논문상

최우수연구논문상 수상자는 당해연도 학술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로, 지원일 기준 직전
3년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 선정한다.

제2항 젊은의공학자상

젊은의공학자상 수상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10년 이내이고 수상후보자 지원일 기준
으로 만 40세 미만인 자들 중에서 산학협력활동 또는 학술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로, 대
한의용생체공학회 정회원 중 선정한다.

제5조(후보자의 추천) 최우수연구논문상 및 젊은의공학자상 수상후보자는 소정양식으로 추천
일 기준 정회원 자격 3년 이상 유지자 2인의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지원한다.

제6조(규칙의 준용) 시상위원회 구성, 심사, 수상자의 결정, 상의 수여, 시상일 및 장소, 수상
자의 의무, 심사료의 지급, 일정, 기타는 제1절 제6조에서 제1절 제14조에 따른다.

제7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1년 시상에 대해서는 본 규칙을 소급 적
용한다.

제4절 (주)대성마리프 의공학상

제1조(목적)

대한의용생체공학회가 주관하고, (주)대성마리프가 후원하는 (주)대성마리프 의공학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주)대성마리프 의공학상이라 칭한다.

제3조(수상인원)

매년 공로상 1명과 최우수산학협력기여상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수상자의 자격)

제1항 공로상

공로상 수상자는 최근 3년간 의용생체공학회의 발전에 끼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지원일 기준 직전 3년간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 선정한다.

제2항 최우수산학협력기여상

최우수산학협력기여상 수상자는 산학협력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로, 지원일 기준 직전 3년간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 선정한다.

제5조(후보자의 추천)

제5조(후보자의 추천) 공로상 수상후보자와 최우수산학협력기여상 수상후보자는 소정양식으로 추천일 기준 정회원 자격 3년 이상 유지자 2인의 추천을 받아서 본인이 지원한다.

제6조(규칙의 준용) 시상위원회 구성, 심사, 수상자의 결정, 상의 수여, 시상일 및 장소, 수상자의 의무, 심사료의 지급, 일정, 기타는 제1절 제6조에서 제1절 제14조에 따른다.

제7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1년 시상에 대해서는 본 규칙을 소급 적용한다.

제5절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우수논문상

제1조(목적)

대한의용생체공학회가 제정하여 시행하는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우수논문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우수논문상이라 칭한다.

제3조(수상인원)

매년 “우수논문상(영문)” 1명과 “우수논문상(국문)” 1명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수상자의 자격)

우수논문상 수상자는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직전년도 영문의공학회지(Biomedical Engineering Letters) 또는 국문의공학회지(Journal of Biomedical Engineering Research)에 논문을 교신저자로 출간한 자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출간한 자로,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정회원인 자로 선발한다.

제5조(후보자의 추천)

우수논문상(영문)은 영문지 편집장 및 편집이사가 우수논문상(국문)은 국문지 편집장 및 편집이사가 각 편집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선발/심사/추천한다.

제6조(상의 수여)

1. 상은 상패로 한다.
2. 상패는 대한의용생체공학회장이 수여한다.

제7조(규칙의 준용) 시상위원회 구성, 심사, 수상자의 결정은 제1절 제6조에서 제1절 제8조, 그리고 시상일 및 장소, 수상자의 의무, 심사료의 지급, 일정, 기타는 제1절 제10조에서 제1절 제14조에 따른다.

제8조 (시행일)

본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1년 시상에 대해서는 본 규칙을 소급 적용한다.

제6절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학술진흥상

제1조(목적)

대한의용생체공학회가 제정하여 시행하는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학술진흥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학술진흥상이라 칭한다.

제3조(수상인원)

수상인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조(수상자의 자격)

학술진흥상 수상자는 영문의용생체공학회지(Biomedical Engineering Letters) 인용, 논문심사 등 학술지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제5조(후보자의 추천)

학술진흥상은 영문지 편집장 및 편집이사가 선발/심사/추천한다.

제6조(상의 수여)

1. 상은 상패와 상금으로 한다.
2. 상패와 상금은 대한의용생체공학회장이 수여한다.

제7조(규칙의 준용) 시상위원회 구성, 심사, 수상자의 결정은 제1절 제6조에서 제1절 제8조, 그리고 시상일 및 장소, 수상자의 의무, 심사료의 지급, 일정, 기타는 제1절 제10조에서 제1절 제14조에 따른다.

제8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1년 시상에 대해서는 본 규칙을 소급 적용한다.